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정 2014. 3. 12.
개정 2014. 12. 15.
개정 2016. 3. 23.
개정 2017. 7. 14.
개정 2018. 1. 4.
개정 2018. 3. 15.
전부개정 2019. 7. 1.
개정 2020. 2. 14.
개정 2022. 1. 21.
개정 2022.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 담당하는 세종학당의 지정 및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학당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을 말한다.
2. “세종학당”이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재단이 지정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일반 세종학당: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 대학(원), 비영리법인 등이 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세종학당으로, 독립형과

연계형이 있다.

- 1) 독립형 세종학당: 현지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세종학당을 말한다.
- 2) 연계형 세종학당: 현지운영기관과 국내운영기관이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종학당을 말한다. <개정 2020.2.14.>

나. 협업형 세종학당: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세종학당을 말한다.

다. 거점 세종학당: 재단이 다른 세종학당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을 정립하고 운영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재단이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세종학당을 말하며, 필요시 연계형 또는 협업형 세종학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라. 문화원 세종학당: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말한다.

마. 교육원 세종학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재외 한국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지운영기관”이란 재단으로부터 세종학당을 운영하도록 지정받은 현지 국가의 정부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말한다.

나. “국내운영기관”이란 재단으로부터 세종학당을 운영하도록 지정받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재외공관 포함),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4. “재단누리집”이란 재단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5.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NBMS)”이란 세종학당 운영자 및 교원 등이 재단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등의 업무자료를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6. “온라인 세종학당”이란 제2호에 따른 세종학당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말한다.
7. 세종학당 “지정”이란 제2호에 따른 세종학당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세종학당 “지정 해제”란 제7호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에 이를 취소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7호에 따른 지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9. “학당장”이란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종학당 운영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영요원”이란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학당장의 관리·감독 아래 학당 운영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2.1.21.】

제3조(적용범위 대상 및 범위) ① 세종학당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업형, 거점 세종학당의 월별보고서의 제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제2장 세종학당의 지정 등

제4조(지정) ① 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세종학당 지정을 위한 심사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

제5조(세종학당의 지정 공고) ① 재단은 세종학당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예정일 6개월 이전에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하여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형 세종학당의 지정 공고는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 기관의 자격요건,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세종학당의 지정요건 및 신청) ① 세종학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기관 등(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은 별표1(협업형의 경우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정신청인은 아래 각 호의 유형에 따라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세종학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가. 독립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설립 허가증 및 등기부 등본(비영리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명단을 포함할 것),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증본}

나. 연계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설립 허가증 및 등기부 등본(비영리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명단을 포함할 것),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증본}, 운영기관 간 업무협약서 등

2. 협업형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가. 운영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등의 공증본
- 나. 운영인력의 이력서 및 증빙서류(교원은 자격증 포함)
- 다. 운영기관 간 업무협약서(해당할 경우)
- 라. 교육허가서(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③ 재단 이사장은 공정한 심사와 적합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서류 외 추가 서류를 모집 공고문에 게시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독립형 세종학당은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하고, 연계형 세종학당은 국내운영기관과 현지운영기관 간에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1.21.】

제7조(세종학당의 지정심사) ① 재단은 지정신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한다.

1. 운영기관의 세종학당 사업 이해도 및 운영 체계성 <개정 2020.2.14.>
2. 운영·교육 인력 구성의 전문성 <개정 2020.2.14.>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반의 체계성 <개정 2020.2.14.>
4. 그 밖에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재단에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8조(세종학당의 지정 및 공개) ① 재단은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학당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한 세종학당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단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종학당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그밖에 세종학당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① 재단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 세종학당의 경우, 세종학당의 지정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종학당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지정된 일반 세종학당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종학당을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정 세종학당 운영기관에서 업무위탁계약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 및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의 기간은 최초 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운영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재단은 위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며, 갱신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매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④ 업무위탁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업무위탁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업무위탁 계약(갱신)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위 기한 이후 갱신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위탁 계약(갱신)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업무위탁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2.1.21.】

제10조(세종학당 운영기관 및 유형의 변경) ① 독립형 세종학당이 연계형 세종학당으로 변경하거나, 연계형 세종학당이 독립형 세종학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유형에 따라 미리 재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1. 독립형 세종학당이 연계형 세종학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에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 <신설 2022.9.1.>
2. 연계형 세종학당이 독립형 세종학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예정인 국내 또는 현지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 <신설 2022.9.1.>
3. 연계형 세종학당이 운영기관을 변경 신청할 경우: 기존 국내(또는 현지) 운영기관과 변경 예정인 현지(또는 국내) 운영기관 간에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운영기관의 장이 신청 <신설 2022.9.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을 경우, 운영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서류를 신청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지침에서 정한다. <신설 2022.9.1.>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에 대해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지정서를 세종학당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개정 2022.9.1.>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세종학당 운영기관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위탁계약의 기간은 변경승인일로부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며, 운영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재단은 위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며, 갱신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매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22.9.1.>

【전문 개정 2022.1.21.】

제11조(협업형 세종학당의 운영) ① 재단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협업형 세종학당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완료한 협업형 세종학당에 교원과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업형 세종학당이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반 세종학당으로 지정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2.1.21.】

제3장 업 무

제12조(기본원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 관계자(학당장, 운영요원, 교원)가 소재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의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하며 대상국 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서를 자극하거나 선교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단 및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문화원과 협의하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사항)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 「세종학당 운영 지침」 및 「업무위탁계약」을 준수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연도별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을 통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교원을 확보하고 강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을 운영할 때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현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항에서 별도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2.1.21.】

제14조(사업운영 및 예산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종학당 운영 변경사항 이외에도 세종학당 운영에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21.】

제15조(외부기관과의 협력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명칭으로 출강하거나 다른 기관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라 세종학당 교원이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출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4.>

제16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운영기관의 장이 예산계획서,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학사관리 등 세종학당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NBMS)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7조(자산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금 및 수익금으로 구입한 세종학당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즉시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손·망실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이 운영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및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수강생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및 구성원

제19조(세종학당의 분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학습자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세종학당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원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면 분원 운영의 필요성, 현지 학습자 수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분원 운영 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필요시 분원 운영에 필요한 교원, 예산 등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성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분원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학당장 승인 등)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학당장을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원 및 운영요원의 채용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교원 및 운영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해당국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단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교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납세 의무의 준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및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세종학당이 채용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발급) <개정 2022.1.21.>

2.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국립국어원에서 인가한 교육기관 해당) 또는 2020년 이후 재단이 시행한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022.1.21.>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개정 2020.2.14.>

③ 재단은 세종학당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교원 및 운영요원의 채용과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2(겸임) ① 운영기관은 현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 학당장과 운영요원, 교원 간에 복수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개의 역할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2.1.21.>

제22조(결격사유) ① 세종학당 운영기관의 장이나 세종학당 관계자(학당장, 운영요원, 교원)들 간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재단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의 “가족관계”란, 대한민국 「민법」 제779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및 제2호에 따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를 의미한다. <개정 2022.1.21.>

③ 단, 현지 사정상 교원 및 운영요원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승인 요청 시 현지 수급 방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원의 파견) ① 재단은 「세종학당재단 한국어교원 파견 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교원을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재단은 세종학당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람을 예비교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③ 세종학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받은 경우 재단의 파견교원 사업 관련 협조사항에 따라야 하며, 파견교원에게 부당한 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교원 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학당재단 한국어교원 파견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예산 운영

제24조(사업비의 편성) ① 세종학당의 예산은 재단 지원금, 운영기관 자체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세종학당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은 원화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금의 산출) ① 재단 이사장은 세종학당의 소재지국 물가수준, 세종학당의 운영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학당별 지원금을 산출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26조(예산의 승인)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22.1.21.>

제27조(예산의 집행) 재단 지원금은 해당 세종학당의 사업기간 동안에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삭제 2022.1.21.>

제28조(지원금의 관리) ① 재단 지원금은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재단과 별도로 합의한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기 전에 그 계좌의 잔고를 0

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의 잔고를 0으로 정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 지원금 중 인건비의 집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으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 지원금 중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원금의 이자, 환차익 등은 재단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납금액이 소액인 경우 송금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단 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에 대한 정산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형 세종학당의 경우: 현지운영기관

2. 연계형 세종학당의 경우: 국내운영기관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원금 정산금액의 반납 및 환수조치) ① 제29조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토 및 정산 확정 시 운영기관이 재단에 반납해야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재단 이사장이 정산확정 통지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반납 처리하여야 하며, 반납하는 사업비의 구체적 사례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1.21.>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반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단 이사장은 해당 운영기관에 반납 금액과 산출내역을 통보하고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의 장이 재단 이사장의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단이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

- 제30조(수강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시간과 학습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정하되, 책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1.>
- ③ 재단은 제2항의 수강료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1조(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운영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수익금 계좌 및 수익금과 관련된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연계형 세종학당이 수익금을 사용할 때에는 국내운영기관과 현지운영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익금의 배분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운영기관의 자부담금 비율을 고려하여 재단과

배분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의 운영기관의 자부담금 비율은 수익금의 발생연도와 상관없이 지정 해제되는 연도의 자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③ 재단은 수익금이 세종학당 운영의 목적,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연도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④ 수익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학당 수익금 관리 및 집행 지침」에 따른다.

제6장 교육과정 등

제33조(세종학당의 교육과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의 기본교육과정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관련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의 특별교육과정은 취업 목적, 학문 목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과 개별 학당의 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2.14.>

④ 제1항의 온라인 교육과정은 세종학당 등록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종학당 강의, 화상강의, 녹화강의 등의 방법을 수단으로 하는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1.21.>

⑤ 법무부 결혼이민, 재외동포, 유학 등 비자 발급요건에 따른 비자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1.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교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어 과정: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그 외 재단이 승인한 교재
2. 한국문화 과정: 세종한국문화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시 주교재 이외에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문화를 교재 내용에 포함한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각 교육과정에 따른 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교재 이외에 동영상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제35조(성취도 평가 및 수수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학당 기본교육과정 중 한국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세종학당 주교재에 따른 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고, 평가 시행 후 4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 한국어 교육과정의 단계별 수수료 기준을 출석률 70% 이상, 성취도 평가 6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본 한국어 교육과정 및 법무부 비자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이외 교육과정에 대한 수수료 기준은 「세종학당 운영 지침」에 따라 각 세종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당은 운영계획서 제출 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4.> <개정 2022.1.2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취도 평가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36조(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 학기 종료 전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기간 종료 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반편성 평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진단평가 또는 온라인 반편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반편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교육장소) ① 세종학당의 교육장소는 세종학당 강의실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라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강의 형태로 세종학당 외 장소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제1항의 출강을 희망하는 세종학당은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문화보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과 현지 문화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이 한국문화 관련 자료를 보급하는 등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재단이 파견하는 문화전문가 또는 문화교육 인턴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등) ①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자와 교원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등을 개최한다.

② 재단은 해외 지역별 한국어교육자 간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별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우수학습자의 연수 기회 제공) 재단은 세종학당에서 선발된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7장 운영 평가

제42조(운영 평가) ① 재단은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세종학당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세종학당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 평가의 결과는 평가 해당연도에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 체결 여부 또는 지원금의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당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평가절차와 방법) ① 재단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 절차 및 방법, 시기 등을 평가 시작 1개월 전까지 각 운영기관의 장과 평가대상 학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평가대상 학당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③ <삭제 2022.1.21.>

④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업무위탁계약 체결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44조(보고서의 제출) ① 운영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에 대한 수시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사업 종료 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평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5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 및 제재 등

제46조(세종학당 운영자문위원회) ①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 운영자문위원회에 세종학당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운영자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

제47조(감독 및 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② 재단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정요구) ①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 중지 등) ① 재단은 현지 사정에 따라 세종학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중지의 명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을 재개하려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세종학당이 1년 이상 운영이 중지되어 운영 재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종학당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운영 중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1.>

④ 제3항의 지정 해제는 제7조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해당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학당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1.>

제50조(경고 및 주의) ① 재단은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세종학당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주의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주의 2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 1회로 본다. <개정 2022.1.21.>

④ 경고 및 주의 적용 기간은 업무위탁계약 기간으로 하며, 재계약 시 소멸된다.

제51조(지정의 해제) ① 재단은 세종학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종학당을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 제4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세종학당의 유형 및 운영기관을 변경한 경우

4. 제42조에 따른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49조에 따라 1년 이상 운영이 중지되어 운영 재개가 더 이상 불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50조에 따른 경고를 업무위탁계약 기간 내에 2회 이상 또는 주의 2회 및 경고 1회 이상 받은 경우
7. 제50조에 따른 주의를 업무위탁계약 기간 내에 4회 이상 받은 경우
8. 최근 3년 내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세종학당 사업목적 또는 내용과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9. 위험지역에서의 세종학당 사업 중단 또는 선교 활동의 금지 등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을 불이행하거나, 세종학당 내에서의 특정 종교 활동 또는 교육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특별한 사유로 더 이상 세종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11. 교육여건의 악화 등 세종학당의 필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세종학당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12. 세종학당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 교원을 파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이 파견교원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13. 세종학당의 지원금 혹은 수익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유용하거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14. 운영기관(장)이나 세종학당 구성원이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운영 관계자들 간의 분쟁 및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하여 세종학당 브랜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거나, 세종학당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
15. 업무위탁계약 또는 협약이 기간 만료되거나, 재단과 세종학당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16. 업무위탁계약이나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17. 그 밖에 세종학당의 지정 목적에 중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지정 해제는 제7조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1.21.】

- 제52조(지정 해제 이후 운영기관의 조치의무 등)** ① 제5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정 해제를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간 학습자 등에 지정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지정 해제 이후 운영기관의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1.】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개정 규정 공포 이전에 진행된 사업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제정한 「세종학당의 전략적 지정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협업형 세종학당 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협업형 세종학당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존 재외공관 협업형은 현행을 유지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업형 세종학당 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및 신규 재외공관 협업형 모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개정 이전 계약된 세종학당 운영에 대한 조치) 본 규정 개정
따라,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세종학당에 대하여 모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개정 이전 계약된 세종학당 운영에 대한 조치) 본 규정 개정
따라,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세종학당에 대하여 모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1.21.>

일반 세종학당 준비 요건(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운 영 주 체	현지 운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국가의 정부 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부속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현지 국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하며,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과 이사진이 전부 현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내 운영 기관 (국내기관 또는 재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부 기관(재외공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국내 대학(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외 기관과 협력하여 국외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은 제외함 ※ 개인 및 사설 학원은 제외하며, 비영리 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이사과 이사진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사진이 법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세종학당 강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강의실이어야 하며, 과정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청각 수업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함 -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운영요원과 교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상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집기(컴퓨터, 복사기 등)를 갖추어야 함 - (자료실) 한국어, 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 가능한 자료실 ※ 행정실 또는 강의실과 병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해야 함 	
인 력	학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한국어교원	<p>운영기관과 적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예정자 가능) 전체 교원의 100%가 다음 각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p> <p>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발급) ※ 중등교사 자격증 해당사항 없음</p> <p>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국립국어원에서 인가한 교육기관 해당) 또는 '20년 이후 재단 시행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③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한국어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 교원 자격 해당 요건에 따른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p>
	운영요원	<p>- 운영기관과 적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예정자 가능)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단, 예정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상당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 지정 해제 검토 사유가 될 수 있음</p> <p>- 세종학당 업무 관련 문서작성(한글, MS워드, 엑셀),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보고 업무, 정산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재외공관 연계형의 경우 공관 채용 직원(행정원)과 별도의 세종학당 운영요원 확보</p>
	비고	<p>- 현지에 근무하려는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합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하거나, 운영기관에서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관광·학생·가족 비자 등 현지법상 근로에 적합하지 않은 비자는 제외</p>
과정		<p>-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p> <p>-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p> <p>- 문화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p>
운영		<p>- 세종학당 사업용 은행계좌는 예금주가 운영기관 명의이어야 하며, 운영기관 내 다른 사업과 혼용하지 않고, 세종학당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수익금이 있을 경우, 추가 개설)</p>

[별표 2] <개정 2022.1.21.>

협업형 세종학당 준비 요건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p>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설 기관을 운영하는 학원 기업체는 제외함 	
<p>시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1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이상 확보 ※ 세종학당 강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강의실이어야 하며, 과정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청각 수업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함 - (행정실) 세종학당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한 행정실 ※ 운영요원과 교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상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집기(컴퓨터, 복사기 등)를 갖추어야 함 - (자료실) 한국어, 한국 문화 자료 열람 및 비치 가능한 자료실 ※ 행정실 또는 강의실과 병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해야 함 	
<p>인 력</p>	<p>학당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학당을 총괄 관리할 ‘세종학당장’ 선임 ※ 세종학당장: 운영 신청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며,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총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p>한국어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에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현지 채용 교원의 경우 한국어 교원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p>운영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과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예정자 가능) 한국인 또는 한국어에 능통한 운영 요원 1명 이상 확보 ※ 운영기관 소속 직원이 운영요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 근무하려는 학당관계자는 학당 근무에 적법한 비자 소지 여부 확인 후 채용하거나, 운영기관에서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관광·학생·가족 비자 등 현지법상 근로에 적합하지 않은 비자는 제외
<p>과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소 초급 또는 중급 수준 2개 과정 이상 개설하여 연 30주 이상 강좌 운영 - 한 강좌는 주당 120분(쉬는 시간 포함) 이상의 한국어 강좌 - 문화강좌 최소 1개 이상 운영 권고 	

[별표 3] <신설 2022.1.21.>

정산 확정에 따른 잔액 반납 및 환수 조치 (제29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지원금 환수 가능 사례	환수 금액
사업비 불인정액 (환수조치)	· 사업 외 목적, 지원금 지원 용도와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 해당 금액 전액
	· 증빙 자료가 없거나 거짓,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정산한 경우	
	· 수익금이 사업 외 목적, 세종학당 운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환수 조치	
	· 집행 증빙 서류가 지출내역상의 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 집행 증빙 서류가 지출내역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지급내역 금액 - 집행 증빙 서류) 전액
	· 당초 계획에 없던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 변경을 재단 사전 승인 없이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집행한 경우	· 해당 금액 전액
	· 기타 증빙 서류 미비 등	· 해당 금액 전액
집행 잔액	· 최종 정산 결과 미집행된 지원금 및 수익금 등이 있을 경우	· 미집행된 지원금 발생 시 : 해당 지원금 전액
이자·환차익	·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 및 환차익	· 전액 반납 원칙

※ 반납액 송금 시 유의 사항 : 입금자명에 반드시 ‘○○세종학당명’(또는 국내운영기관명)으로 작성

※ 지원금 통장을 해지할 경우 발생한 결산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정산보고서 제출 후 발생한 결산 이자도 공문 처리를 통해 반납해야 함)

○ 지원금의 일부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종학당재단은 기관에 반납액과 산출내역을 통보하고,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재단은 기관의 소명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반납액은 재단이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에 반납해야 함

[별표 4] <개정 2022.1.21.>

경고 및 주의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위반 사항	해당 조문	제재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단 및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문화원과 협의하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고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명칭으로 출강하거나 다른 기관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세종학당 교원이 다른 기관의 요청을 받아 출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학당장을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세종학당 운영기관의 장이나 세종학당 관계자(학당장, 운영요원, 교원)들 간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명 또는 채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재단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세종학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받은 경우 재단의 파견교원 사업 관련 협조사항에 따라야 하며, 파견교원에게 부당한 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위반 사항	해당 조문	제재
	한다.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별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재단 지원금은 해당 세종학당의 사업기간 동안에만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재단 지원금 중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원금의 이자, 환차익 등은 재단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납금액이 소액인 경우 송금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p>운영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어 과정: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그 외 재단이 승인한 교재 2. 한국문화 과정: 세종한국문화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운영 중지의 명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운영을 재개하려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학당 운영책임자(운영기관의 장, 학당장)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기타 경고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조문	제재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세종학당 운영 변경사항 이외에도 세종학당 운영에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의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세종학당의 교원 및 운영 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현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해당국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단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교원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납세 의무의 준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및 현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수익금 계좌 및 수익금과 관련된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연계형 세종학당이 수익금을 사용할 때에는 국내운영기관과 현지운영기관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익금을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재단은 수익금이 세종학당 운영의 목적,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연도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위반 사항	해당 조문	제재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매 학기 종료 전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업무위탁계약 체결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에 대한 수시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주의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1.21.>

일반 세종학당 신청서

구분	주요 내용
신청기관 정보	- 기본정보 - 신청기관(현지운영기관, 국내운영기관) 정보 및 대표 자, 실무자 정보 - 세종학당 운영 예정지 정보 등
사업계획서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등
운영계획서	- 세종학당 정보 - 운영인력(학당장, 운영요원, 교원) 정보 - 시설, 기자재 현황 - 개설 과정 정보, 행사 계획 등
예산계획서	- 예산계획 - 세부 집행 계획 등
참고자료	- 신청 기관 언론보도 내용, 기관 추천서 등

※ 실제 신청은 세종학당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ksif.or.kr>)을 통하여 접수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운영요원	전체	명 (한국인: 명/ 현지인: 명)
	한국인	○이름/ 체류 자격
	현지인	
파견 교원	비자 지원 정보	○(강사 업무가 가능한 비자 종류) ○(비자 발급 절차) ○(필요 서류 및 필요 조건)

(2) 시설 운영 계획

시설 주소						
소유 현황	<input type="checkbox"/> 자체 보유 시설 <input type="checkbox"/> 임차 (유상) <input type="checkbox"/> 임차 (무상)					
시설 현황	○ 현지 건물					
	<table border="1" style="width:100%; height:100%;">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able>					
○ 강의실 (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height:100%;">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able>						
강의실1(수용인원: 명)						
○ 행정실 및 기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height:100%;">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height:100%;">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r><td style="width:50%;"></td><td style="width:50%;"></td></tr> </table>						

(3) 교육 운영 계획

참재 수요	○(예상 규모) ○(예상 학습자)
학습 목적	※ 취업, 유학, 취미 등 예상되는 현지 학습자의 학습 목적, 희망 문화 수업 분야 기재
수강료	<input type="checkbox"/> 무료 <input type="checkbox"/> 유료 (학기당 원)

(4) 예산 운영 계획

예산 계획	○ 예산 투입 계획		
	'20년	'21년	'22년
예산 확보 방안	○ 예) 조례 제정을 통한 고정 사업비 확보		

※ 필요시 추가 서류(기관 간 업무협약서, 적법성 확인 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1.21.>



제 - 학당 - 호

세종학당 지정서

소재지:

세종학당명: ○ ○ 세종학당

운영기관명:

위 기관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기관 ○ ○ 세종학당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 ○ ○

[별지 제4호 서식] <2019.7.1. 개정>, <2020.2.14 개정>

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서

Agreement of Entrustment for King Sejong Institute

<p>세종학당재단(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보급 및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한 00세종학당 운영업무 위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p>	<p>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B") with respect to entrustment of operations of _____ King Sejong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he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or a second language and Korean culture as follows:</p>
<p>제1조 (계약의 목적 및 기간)</p> <p>① ‘갑’ 은 계약기간 동안 ‘을’ 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을’ 은 계약기간 동안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00세종학당을 운영한다.</p> <p>② 세종학당 운영업무 위탁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종학당 사업기간은 매년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p> <p>· 0000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p>	<p>Article 1 (Purpose and Term of Agreement)</p> <p>①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shall provide "B" with support funds as defined in Article 3, and "B" shall operate the _____ King Sejong Institute(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itute") to disseminat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p> <p>②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e shall be from DD. MM. YYYY until DD. MM. YYYY</p>
<p>제2조 (계약의 이행)</p> <p>① ‘을’ 은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p> <p>②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르되, 이에 정한 바가 없거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 과 ‘을’ 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p>	<p>Article 2 (Fulfillment of Contract)</p> <p>① "B" shall faithfully carry out i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stipulated in this Agreement.</p> <p>② Matters not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cided upon following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 In the event that neither contain relevant clauses or the contents needed, "A" and "B" shall reach a conclusion through mutual consultation.</p>
<p>제3조 (위탁금액 및 사업비)</p>	<p>Article 3 (Entrustment Amount and Project Funds)</p>

- ① 위탁금액이란 사업기간마다 「세종학당 운영 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 상의 절차에 따라 ‘을’ 이 신청하고 ‘갑’ 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통보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② 사업비란 ‘갑’ 이 지원하는 지원금과 ‘을’ 의 자체 부담금(이하 ‘자부담금’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세종학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세종학당 운영을 위해 ‘갑’ 과 ‘을’ 이 투자하는 합산금액을 말한다.

- ① "Entrustment amount" shall refer to the support funds, which is applied by "B" and reviewed by "A" and then finally approved and notifi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under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 for each operating duration.
- ② "Project funds" shall refer to the total investment amount made by "A" and "B" to operate the Institute, which include the support funds provided by "A," the funds provided by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itutional funds"), and any other profits, etc. from the operations of the Institute.

제4조 (지원금 신청 및 확정 통보)

- ① ‘을’ 은 ‘갑’ 에게 업무위탁계약기간 중 매 사업연도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확정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갑’ 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이를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승인한다.

Article 4 (Application for Support Funds and Notification of Approval)

- ①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B"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A" for support funds and obtain approval from "A."
- ② "A" shall review relevant documents of the appl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and then modify the application in consultation with "B" and grant final approval no later tha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제5조 (지원금 지급)

- ① ‘을’ 은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전용계좌 개설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 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갑’ 은 세종학당 운영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지원금을 ‘을’ 의 지원금 전용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갑’ 은 ‘을’ 과 협의

Article 5 (Payment of Support Funds)

- ① "B" shall open a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Operating Institution and manage support funds independently; provided, however, that if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open a dedicated account due to local circumstances, it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in consultation with "A."
- ② "A" shall remit the support funds for the Operation Project of King Sejong Institute

하여 지원금 지급의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업무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 총 사업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시 확정된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이 축소 집행된 경우 ‘갑’은 총 예산의 변경 내역, 축소비율 등에 따라 차기 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1(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을’은 매년 ‘갑’의 지원금 확정 통보 후 지원금 교부받기 전까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당연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갑’은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은 연도별 ‘갑’의 지원금에 대해 각각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0000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까지)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④ 국내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할 경우, 현지 국책은행 등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①과 ④가 불가능할 경우에 증권 가입 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계약서로 “을”은 세종학당 지원금 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에 “을”은 “갑”에게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한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o "B"'s dedicated account for support funds; provided, however, that "A" may change the timing of payment and the amount of the funds in consultation with "B."

③ "B" shall sincerely execute the total Project funds specified in this Entrustment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④ If "B"'s Institutional funds have been administered in a reduced amount compared to that of the total project funds finalized when this Agreement has been set, "A" may change and pay support funds for the next term considering changes of total budget, a percent of reduction, etc.

Article 5-1 (Submittal of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Policy)

① Upon "A"'s notice on the provision of a support fund, "B" shall submit a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policy for the year before "A"'s payment of the support fund. When "B" fails to submit the insurance policy, "A" may decide to cancel the plan to provide the support fund.

② Th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stated in the foregoing article ① shall state that it concerns "A"'s support fund for the year and the insurance period shall be set as follows.

- For the year, from DD. MM. YYYY until DD. MM. YYYY to DD. MM. YYYY until DD. MM. YYYY (from the first day of the project period through eight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period)

③ All expenses for issuance of the performance guarantee insurance policy shall be borne by "A".

④ Where it is difficult to acquire a policy from a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a guarantee issued by a government-run bank of the relevant country shall be submitted.

⑤ If "B" is not able to take Performance Guarantee

	<p>Insurance, “B” should submit a statement that explains the reason. After submission, the agreement is presumed to prove that “B” sha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KSI support funds, and “B” shall return the support fund in the event that “B” uses the support funds for other purposes than the one established in this agreement.</p>
<p>제6조 (사업 착수)</p> <p>① ‘을’ 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세종학당 수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 등으로 세종학당 수업이 지연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을’ 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갑’ 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수업 개시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을’ 이 수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갑’ 은 제16조제1항다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p>	<p>Article 6 (Start of Project)</p> <p>① "B" shall start classes for the Institute within two (2) months after signing the Agre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classes for the Institute are delayed due to local circumstances and the like, "B" shall obtain approval from "A" without delay.</p> <p>② In the event that "B" does not commence class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within two (2) months after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A" may designate a certain period and request "B" to commence classes within the period. In the event that "B" does not commence classes within the period, "A"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6 Paragraph 1 Subparagraph C.</p>
<p>제7조 (운영기관의 변경)</p> <p>을’ 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갑’ 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Article 7 (Change of Operating Institution)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change the Operating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it shall give "A" a prior request to change and obtain approval from "A."</p>
<p>제8조 (사업 보고)</p> <p>‘을’ 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지침서」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해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가. 세종학당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p> <p>나. 기타 보고: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p>	<p>Article 8 (Project Report)</p> <p>"B" shall report to "A" with regards to operations within the following periods according to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p> <p>A. Report of Result of Operation and Settlement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within fifteen (15) days</p>

<p>종학당 운영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p>	<p>after the end of an operating period; B. Other Report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p>
<p>제9조 (사업 변경)</p> <p>① ‘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가. 지원금 및 수익금 사용의 변경 나. 사업계획의 조정 다. 세종학당장의 변경</p> <p>② 제1항 이외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p> <p>가. 교원·운영요원의 변경 및 채용 나. 자부담금 사용계획의 변경 다. 교육과정의 변경</p> <p>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사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갑’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계약에 명시된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p>	<p>Article 9 (Operational Changes)</p> <p>①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change the following matters while performing operation, it shall obtain approval from "A" as specified in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p> <p>A. Change of use of support funds and profits; B. Modifications of the operation plans; or C. Change of the director of the King Sejong Institute.</p> <p>② "B" shall give "A" advance notice of the following matters other than those in Paragraph 1:</p> <p>A. Change or employment of teachers and operational staff; B. Change of a plans for use of institutional funds; or C. Change of curriculum.</p> <p>③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 related to the operation in matters other than in Article 9 Paragraph 1 or 2, "B" shall report to "A" and discuss the matter with "A."</p> <p>④ "B"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operation plan no later than one (1) month before the end date of the operating duration specified in this Agreement.</p>
<p>제10조 (사업비 집행)</p> <p>① ‘을’은 ‘갑’이 확정·통보한 지원금에 맞추어 ‘을’이 최종 제출한 예산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금, 자부담금, 수익금 등의 사업비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p> <p>③ ‘갑’의 지원금과 ‘을’의 자부담금 또는 수익</p>	<p>Article 10 (Administration of Project Funds)</p> <p>① "B" shall administer the project fund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s of support funds within the business period, within the limit of support funds finalized and notified by "A"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on plan under the budget plan that is finally submitted by "B."</p> <p>② The project funds including support funds,</p>

금 간에는 전용할 수 없다.

④ ‘을’은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신청을 통해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지원금의 비목 내 예산 금액의 40퍼센트(인건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월별 보고서 ‘갑’에게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 내 비목, 세목의 신설 및 비목간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예산 변경신청을 통해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을’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균형 있게 집행하여 지원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금 처리)

① 수익금은 ‘을’의 세종학당 수강료 등을 포함하여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② ‘을’은 수익금을 지원금 및 자부담금과 별도의 독립 계좌로 관리하여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의 사용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수익금의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세종학당 운영 사업 목적 이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세종학당의 지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시 수

institutional funds, and profits shall be administered according to the plans in Paragraph 1.

③ "B" may not convert "A"'s support funds into its institutional funds or profits and vice versa.

④ If need be, "B" may change the plan for using the support fund after obtaining "A"'s approval in advance. In the event that a support amount does not exceed 40% of the fixed budget amount (or 20% in the case of labor/business promotion expenses), "B" may proceed with the plan on its own, but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such a change to "A" in its monthly report.

⑤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newly establish a category or detailed items of expenditure within the support funds or convert one item of expenses into the other, they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budget with "A" and obtain prior approval from "A."

⑥ "B" shall make efforts to minimize non-execution of the support funds and its institutional funds by administering the support funds and institutional funds made to them in a balanced way in executing the project funds.

Article 11 (Processing of Profits)

① "Profits" shall refer to the proceeds from the operations of the Institute, including "B"'s tuition fees for the Institute.

② "B" shall manage profits in an independent account separate from that of the support funds and institutional funds so that the income and expenditures are clarified.

③ "B" shall use the profits by obtaining prior approval from "A," but it shall report to "A" regarding the details of profits and uses thereof.

④ "B" shall not use the profits accrued under Paragraph 1 at will for purposes other than the

익금은 계약 상의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을 고려하여 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수익금을 ‘갑’에 반납한다.

purpose of operating the Institute.

⑤ When designation as a King Sejong Institute is revoked or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the remaining profits commensurate with a relevant percent of the support funds shall be returned to "A" considering the rates of support funds and institutional funds under this Agreement.

제12조 (자부담금)

- ① 자부담금은 제11조의 수익금 이외에 ‘을’이 세종학당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을’은 자부담금을 예산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사용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12 (Institutional Funds)

- ① Institutional funds shall refer to the contributions voluntarily made by "B" for operations of the Institute other than the profits specified in Article 11.
- ② "B" shall include its institutional funds on a budget plan and a settlement statement, and report the details of use to "A."

제13조 (사업비 정산)

- ① ‘을’은 제8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갑’에게 사업기간 내 집행한 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수익금 등 포함)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 ② 사업비 정산 보고 시,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정산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법령 또는 운영 기관의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법령에 따른 공증을 거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비를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을’에게 반납금액과 해당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 ‘갑’은 환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Article 13 (Settlement of Project Funds)

- ① "B" shall submit to "A" a settlement statement for the project funds (including the support funds, institutional funds made to them, profits) administered within a relevant operating period by the period specified in Article 8. In this case, the submission method shall follow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
- ② When a settlement statement for project funds is to be reported, in principle, the original copies of settlement related documents, including documentary evidence, shall be submitted; provided, however, that when the submission of original copies is impossible due to local laws or regulations by the operating institution, copies may be submitted with appropriate notarization in accordance with local laws. In this case, "A" may ask "B" to submit a written confirmation that ensures the copy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을’ 은 제4항에 따른 ‘갑’ 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갑’ 이 요청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을’ 은 지원금 중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원금의 이자, 환차익 등을 ‘갑’ 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납금액이 소액인 경우 송금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 ‘갑’ 은 필요 시 현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갑’ 의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회계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관 서류는 ‘갑’ 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A" shall review a settlement statement submitted by "B," and finally settle and approve relevant project funds within a relevant operation period.

④ In the event that "A" redeems some of the support funds, it shall notify "B" of an amount required to be returned and the details thereof. In this case, "A" may request "B" to provide materials necessary to calculate an amount to be redeemed and "B" shall comply therewith.

⑤ ‘B’ shall either submit explanatory materials or return an amount requested by "A"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its receipt of a notice from "A" pursuant to Paragraph 4.

⑥ In principle, "B" shall return to "A" the amounts not administered out of the support funds, interest accrued on the support funds, foreign exchange profits, etc.;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mounts to be returned are small, an exception may be made considering payment of fees for remittance, etc.

⑦ If necessary, "A" may conduct on-site auditing. In this case, "B" shall provide active cooperation for "A"'s auditing.

⑧ In principle, all the submitted documents including documentary evidence for accounting shall be retained for five (5) years. In this case, upon request by "A" for the retained documents, "B" shall forthwith submit the documents.

제14조 (교육과정 및 교재 사용)

① ‘을’ 은 계약기간 동안 ‘갑’ 이 정하는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교재(세종 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한국문화)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Article 14 (Curriculum and Use of Textbooks)

① ‘B’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basic curriculum based on “A’s” King Sejong Institute Curriculum throughout the contract period.

② The basic curriculum stated in the foregoing ① shall use “A’s” textbooks (i.e. Sejong Korean, Sejong Korean Conversation, Sejong Korean Culture) as its main textbooks.

제15조 (사업평가 등)

Article 15 (Project Evaluation, etc.)

① ‘갑’은 ‘을’의 사업에 대해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갑’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을’의 사업에 대해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체결 또는 지원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A" may conduct evaluation for the project entrusted to "B."

② "A" may organize an evaluation committee, conduct evaluation for the operation of "B," and reflect the results in entering into an Agreement or in paying the support funds.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나. 그밖에 ‘갑’이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사후 조치

- 가.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세종학당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지원금과 그 지원금으로 발생한 환차익 및 이자 등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집행된 지원금과 그 지원금으로 발생한 환차익 및 이자 등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나. ‘을’은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지원금으로 구입한 세종학당 기자재를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주변 세종학당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한국어 보급기관 등으로 인계하여 사용하게 한다.
- 다. ‘을’은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안 ‘갑’이 별도 통보한 내용을 해당 세종학당의 학습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Article 16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Agreement)

① In the event that "B"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B":

A. In the event that designation as a King Sejong Institute has been revoked under the King Sejong Operation Regulations or the King Sejong Operation Guidelines;

B. Other unavoidable instances that prevents "A" from paying support funds to "B"

C. In the event that "B" has not commenced classes for the Institute without reasonable grounds within two (2) months after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② Consequences upon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Agreement

A.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has been terminated, "B" shall suspend all the works related to the Institute and return to "A" the support funds commensurate with the remaining term of this Agreement, and any foreign exchange profits or interest accrued from the support funds, etc.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has been rescinded as a result of use of the support funds for other purposes, "B" shall return to "A" the support funds that have already been paid and any foreign exchange profits or interest accrued from the support funds, etc. as well.

B.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has been rescinded or terminated, "B" shall turn over the materials and equipment of the Institute it has purchased with the support funds, to its adjacent

	<p>King Sejong Institutes or diplomatic off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stitutions for disseminating the Korean language, etc. as designated by "A" within one (1) month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of a notice of rescission or termination, and make them available for use.</p> <p>C. "B" shall inform students, etc. of the content independently notified by "A" for one (1) month from the date of its receipt of a notice rescission or termin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students and users of the Institute whose Agreement has been rescinded or terminated may use adjacent King Sejong Institutes.</p>
<p>제17조 (보안 준수 의무)</p> <p>‘을’ 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계약의 내용과 이행 및 관련된 사항 중 보안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비밀유지 의무기간은 현지국가 법령, 기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갑’ 과 ‘을’ 이 달리 정할 수 있다.</p>	<p>Article 17 (Confidentiality Obligation)</p> <p>Not only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but also even after expiration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or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not disclose the provisions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that it has acqui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its duties, and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ut of related matters; provided, however, that the term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 may be decided upon by "A" and "B" in consideration of local laws and involved institutions.</p>
<p>제18조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금지)</p> <p>‘을’ 은 ‘갑’ 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p>	<p>Article 18 (Transfer Prohibition of Contract Rights and Obligations) "B" cannot transfer its rights or obligations stated in this Contract to a third party without a written approval from "A."</p>
<p>제19조 (사업참여의 제한)</p> <p>①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규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p> <p>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p> <p>나. ‘을’ 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갑’ 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 를 받은 경우</p> <p>다. ‘갑’ 의 사업평가 및 회계 감사 결과 ‘우위’, ‘경고’ 조처해당하는 경우</p>	<p>Article 19 (Business Participation Restriction)</p> <p>① "A" holds the right to limit "B" from participating in new businesses with "A" for three years in the occurrence of the following events:</p> <p>A.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rescinded or cancelled according to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Regulations or the King Sejong Institute Operation Guidelines</p> <p>B. In the event that "B" received two or more</p>

<p>라.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p>	<p>‘warnings’ from "A" for not complying with this Agreement</p> <p>C. In the event that "B" received a ‘caution’ or ‘warning’ from the Business Evaluation and Financial Auditing conducted by "A"</p> <p>D. In the event that "B" embezzled support funds</p>
<p>제20조(준거법)</p> <p>계약의 효력과 해석 및 이행에 관련해 협의 및 양 측의 관할법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계약의 효력과 해석 및 이행에 대한 해석은 피소된 자의 국가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p>	<p>Article 20 (Governing Law)</p> <p>In the event that a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either Party may seek resolution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hould legal action be required,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of the Party against which a claim is made by the other Party.</p>
<p>제21조(불가항력조항)</p> <p>계약이 전쟁, 혁명, 폭동, 파업이나 기타 노동분쟁, 화재, 홍수, 태풍, 정부의 제한조치 또는 ‘갑’과 ‘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된 때에는, ‘갑’과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러한 원인이 제거된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관련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Article 21 (Force Majeure)</p> <p>In the event where the Agreement is all or partially impossible to perform or delayed for implementation due to wars, revolutions, riots, strikes or other forms of labor disputes, fires, floods, typhoons, regulatory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r other reasons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A" or "B", "A" and "B"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on the grounds of force majeure. The parties do, however,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instances. When the force majeure situation has been resolved, the affected party shall resume its obligations unless the Agreement has become null and void.</p>
<p>제22조(분쟁해결방법)</p> <p>계약서와 관련하여 또는 계약서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다만,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계약이행지 법원의 관할에 따른다.</p>	<p>Article 22 (Dispute Resolution)</p> <p>Any dispute in connection with or derived from the Agreement shall be amicably settled between "A" and "B" through mutual agreement. However, disputes that are not be settl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ourt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Agreement has been signed and sealed by both parties.</p>
<p>제23조 (계약서 작성 언어)</p> <p>① 계약서는 한글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한다. 다</p>	<p>Article 23 (Language of Agreement)</p> <p>① The Agreement shall be provided in both Korean</p>

<p>만,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을’ 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현지국가의 언어에 의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한글본 계약서와 영어본 계약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나, 양자 간 각 조항에 관한 의미의 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글본에 따른다.</p>	<p>and English; provided that when "B" is located within a non-English-speaking country, a translated Agreement in that country's language may be attached.</p> <p>② Both the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of the Agreement stated in Paragraph 1 shall be equally effective. However, the Korean version will take precedence in the event where there are disagreements over interpretation between the parties arise in regards to the Agreement.</p>
<p>제24조(계약의 효력발생)</p> <p>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 과 ‘을’ 이 상호 확인하고 이견이 없을 때에는 공히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Article 24 (Effect of Agreement)</p> <p>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when "A" and "B" verify the contents and find that there are no conflicting opinions between both parties, mutually sign and seal this Agreement that has been draft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23. In order to prove the formation of this Agreement, "A" and "B" shall each retain one copy of the Agreement signed and sealed by both parties.</p>

0000년 00월 00일

갑	기관명/대표 :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인)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7761
	주소 :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을	기관명/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Date:)

A	Name of Institution/Representativ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signature)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109-82-07761
	Address: 11F, 12F Seocho Pyeonghwa building, 22,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B	Name of Institution/Representative: (signature)
	Corporate Registration Number:
	Address: